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04

2013. 7. 4.
재정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3년 6월 14일

나. 제 안 자 : 이형석 의원(찬성자 10명)

다. 회부일자 : 2013년 6월 18일

라.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2013년 7월 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

○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있는 바,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음.

이에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 및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임.

Ⅲ. 주요내용

○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을 명시함(안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함(안 제9조제2항).

Ⅳ.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 남 중)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적격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다 투명화·명확화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된 것임.

나. 민간위탁[1]사무의 현황

○ 지방분권의 가속화와 현대 행정의 복잡·다양성으로 인해 지방행정의 담당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부분 서비스에 민간의 전문성과 창조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무 유형별 구분>

※ 총 예산 : 10,070억원 (2013.6.1현재)

구 분	계	예산지원형			수익창출형
		소 계	시 설	사 무	
건 수	340	305	196	109	35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서울시의 민간위탁사무를 유형별로 보면, 시설형 위탁사무 196건, 사무형 위탁사무 109건, 수익형 위탁사무가 35건 등, 모두 340건에 예산 규모는 1조 7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소관상임위원회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소관상임위원회별 민간위탁사무 현황>

(2013.6.1현재)

구분	합 계	행정 자치	재정 경제	환경 수자원	문화체 육관광	보건 복지	건설	도시 계획	교통	도시 안전
건수	340	7	35	54	36	182	5	2	12	7

다.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 신설(안 제9조)

○ 개정안에서는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위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 >

1.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민간위탁사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 이유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는 '조직담당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지만 적격자심의위원회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회원회가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임.

○ 한편,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방안 '10.12)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에 수탁기관 선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일부 내용이 이미 시행규칙으로 운영되어 왔던 사항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5조(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9조의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한다.

③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격자심의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개정안의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 중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민간위탁사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7조에서 의원은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사항(2010.12)에서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배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 해당 위원 자격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2010.11.2, 제정]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Ⅴ.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을 수정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 중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민간위탁사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함(안 제9조제2항제1호).

Ⅵ.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1404

제안년월일 : 2013년 7월 4일
제 안 자 : 재정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을 수정함.

2. 수정의 주요내용

가.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 중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민간위탁사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함(안 제9조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생략) <신설>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생략) 1.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민간위탁 사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 6. (생략)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생략)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 6.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하고”를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로 하며, 제1호부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 ---------- ---------- -----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